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1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비과세	3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비과세(윤준병의원안)

현행	윤준병의원안
□ <신설>	□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비과세(안 제104조의36 신설) ○ 적용대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 ○ 공제대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

* 윤준병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6)

□ 개정안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 중 같은 법에 따라 개사육업을 폐지한 자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약 600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음.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되었고¹⁾,

위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업체²⁾는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
는 전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며,
농장주 등은 2024년 5월까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8월까지 폐업, 전업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구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3년 12월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의 제정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음.

*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35)」,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9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374)」,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80)」,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39)」,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143)」,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25131)」

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체적 해결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만 5,000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기로 함.

정부는 마리당 지원단가를 기간별로 나누어 차등지급함으로써 조속한 개사육 종식을 도모하고 있는데, 마리당 5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간인 2구간 종료 시점인 2025년 8월 6일 기준 전체 개사육농가 1,537호 중 70%인 1,072호가 폐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사육 두수 46만 8,000두의 74%인 34만 5,590두에 대한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음.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 분포 및 지원금 단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간	'24.8.7.~ '25.2.6.	'25.2.7.~ 8.6.	'25.8.7.~12 .21.	'25.12.22. ~'26.5.6.	'26.5.7.~9. 21.	'26.9.22.~ '27.2.6.
지원 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계 획 (A)	642호	201호	58호	56호	73호	507호
	152,687마리	85,174마리	26,075마리	18,089마리	16,196마리	169,908마리
실적 (B)	611호	461호 (129%↑)	폐업 누계	1,072호 (전체 농가 1,537호의 70%)		
(B/A)	152,046마리	193,544마리 (127%↑)		345,590두 (전체 두수 468천두의 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 농장은 지원 배제,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은 '24.8월 기준

또한,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함.

□ 개정안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³⁾,

첫째, 개식용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기간의 논의 끝에 「개식용종식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전·폐업 지원방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였으나,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서는 업계의 조속한 전·폐업이 전제되어야 함.

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②~⑥ (생략)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구조개선 정책 집행의 속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정부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폐업·퇴출 보상금에 과세를 유지할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에서의 퇴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이라는 추가적 장벽을 제거할 경우 해당 업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세후 실수령액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상수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상금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납세비용 및 불복 대응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징세 및 납세 관련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다음으로, 고령층 및 영세사업자들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령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며, 부채 정리·전업·재취업 등 폐업 이후의 연락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폐업지원금 등 사업상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며, 손실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

됨.⁴⁾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살처분 보상금⁵⁾, 「공익사업법」 상 보상금⁶⁾ 등 다른 보상금 역시 사업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하고 있음.

둘째, 폐업하는 농장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잔여건 보호관리비 등 국비 48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업계 전·폐업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4)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